

■ 보호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[별표 4] <신설 2023. 6. 5.>
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(제18조제1항 관련)

1.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

	국가보훈등록증	(국가보훈대상자 구분)
사 진 3.5cm×4.5cm (모자 벗은 상반신으로 배경 없이 6개월 내에 촬영한 컬러사진)	(성명)	
	(주민등록번호)	
	(대상 구분)	
	보훈번호:	
	(주소)	
	(경합 등록사항)	
	(발행연월일)	국가보훈부장관 직인

2.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 기재사항 작성방법 등

가. 대상 구분란에는 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적용 대상 보호보상대상자 또는 그 선순위 유족과 법 제6조에 따른 상이등급(법 제2조제1항제2호·제4호에 따른 재해부상군경·재해부상공무원 본인만 해당한다)을 기재한다.

나. 다음 사항을 추가등록하는 경우에는 이를 모두 경합 등록사항란에 기재한다.

- 1) 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적용 대상 중 대상 구분란에 기재되어 있는 적용 대상 외의 다른 적용 대상 보호보상대상자 또는 그 선순위 유족
- 2) 「5·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4조 각 호에 따른 5·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선순위 유족
- 3)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3호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나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
- 4)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선순위 유족
- 5)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(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)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·공무원 또는 그 선순위 유족
- 6) 「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기복무 제대군인이나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중기복무 제대군인
- 7)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3조 각 호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선순위 유족